

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(담당자 신동학, ☎ 02-879-63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청문참석 시 지참물

- 신분증
-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

※ 의견서 제출 안내

- 제출기한: 2026. 5. 15.(금)까지
- 제 출 처: 관악구청 주택과
- 제출방법
 - 서 면(FAX): 02-879-7831
 - 우편접수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, 6층 주택과
 - 전자우편: narcis@ga.go.kr
- 기 타: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